【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투찰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대상입니다.**

◎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는 공사이며,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 ·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바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처리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24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국도24호선 얼음골대교(상,하) 시설물 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예정금액	**181,720,000**	추정가격	165,200,000
		부가가치세	16,52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기초금액	**181,720,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A값(부가세 별도)	**16,854,081**	국민연금보험료	1,894,800
국민건강보험료	1,434,0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8,436
퇴직공제부금비	917,4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6,577
안전관리비	10,642,722	품질관리비	540,000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 2026. 10. 28. 10:00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일원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 100%**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무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붙임5], [붙임6]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준비자료

구분	제출 자료(예시)
기본정보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서식)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4.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7. 최근 3개월 기술인 급여대장, 기술인 급여 이체증 8. 기술인 근로계약서 9. 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
자본금	1.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발행** 부속서류 포함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예시: 결산일 12.31->총3장 11월30일, 12월31일, 1월31일) 3. 합계잔액시산표(결산일 기준) 4. 출자좌수확인원(결산일 기준, 공제조합)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간판, 출입문 등)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 위는 예시이며, 개찰 이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할 예정 및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055-340-6656)**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공사입찰유의서」제18조제4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합니다.

마. 본 사업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요시 공고문 8항다호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시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자.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필요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0조에 따라 시공경험을 평가합니다.

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사대감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단,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종합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가. '24. 1. 27. 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및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9)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6)

2026. 10. 2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_____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참고 **안전관리 안내문**

본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붙임5】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_____

ㅇ 주　　소 : _____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2　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 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8-2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의 상시근무에 지장이 있는가? ※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와 계약한 근로시간 외 시간 및 휴가·연가 등을 활용한 대학강의·온라인판매업·부동산중개업·야간택배·임대업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술인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 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현금지급여부), 최저임금이하 지급여부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